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정철영 |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전공 교수/부학장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의 운영 현황

2004년부터 시작된 「학교기업지원사업」을 통하여 1번 이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대학교 학교기업의 수는 37개(64.9%)이다. (사)한국학교기업협회에서 2008년 11월에 조사한 학교기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1회 지원받은 학교기업의 수가 25개교(43.9%)로 가장 많고, 2회 지원받은 학교기업의 수는 7개교(12.3%), 3회 지원받은 학교기업의 수는 5개교(8.8%)이다. 반면, 국고지원을 1회도 받지 못한 학교기업의 수는 20개교(35.1%)인데, (사)한국학교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지만 조사에서 누락된 학교기업의 수를 포함할 경우,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기업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대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을 보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기업의 수가 27개교로 전체 학교기업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1개교로 전체의 19.3%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5개교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성과 유형별로 대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을 보면, (1) 교육성과와 수익성과가 모두 우수한 선도형 학교기업은 4개교(25.0%), (2)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육형 학교기업은 3개교(18.8%), (3) 수익성과가 우수한 수익형 학교기업은 3개교(18.8%), (4) 교육성과와 수익성과가 미약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발전가능형 학교기업(후진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기업)은 1개교(6.3%), (5) 교육적 측면과 수익적 측면 모두 타 학교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후진형 학교기업은 5개(31.3%)이다(그림 1,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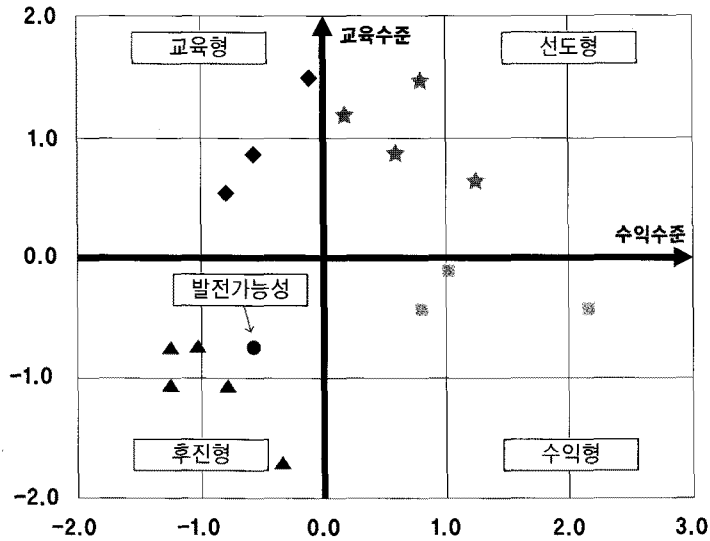


그림 1. 성과 유형별 대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주 1) 학교기업 분류에 사용된 자료는 2기 2차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교 16개교 (2차에서 2개교 사업 중단)의 자체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 주 2) 각 지표는 5단계의 척도로 나누고, 각 척도마다 Z값을 기준으로 한 상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 주 3) ☆ : 선도형, ◇ : 교육중심형, □ : 사업중심형, ○ : 발전가능형, △ : 후진형

표 1. 성과 유형별 대학교 학교기업 현황

구분	선도형	교육형	수익형	발전가능형	후진형	합계
학교수	4개교	3개교	3개교	1개교	5개교	16개교
비율	25.0%	18.8%	18.8%	6.3%	31.3%	100.0%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의 경우, 교육적 측면 이외에 수익적 측면 역시 성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기업은 수익성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의 현황

제1기에서 제3기까지 5년에 걸친 학교기업지원사업 재정지원과 수혜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 권역별 학교기업의 인프라구축, 현장실습 인재양성, 학교기업 매출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표 2〉 참조). 한편, 예산 지원은 1기의 경우에는 최소 2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이 지원되었고, 2기 경우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A 등급은 4.5억 원 이내, B 등급은 4억 원 이내, C 등급은 2.5억 원 이내로 지급하



였으며, 3기에서는 신규와 기존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신규 A 등급 4.5억 원, B 등급 4억 원, C 등급 3.5억 원이고 기존 A 등급은 1.5억 원, B 등급은 1.25억 원, C 등급은 1억 원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총 지원 예산 규모는 1기에 123억 9천4백만 원, 2기는 114억 3천5백만 원, 3기는 34억 5천만 원으로 초기 학교기업이 기술과 재정확보가 가능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중심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총 지원 예산 규모

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신규부문의 경우 인건비 40% 이내, 현장실습비 20% 이상, 운영비 20% 이내로 편성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부문의 경우에는 1,2기 지원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적 성격이 강함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 기자재 구축 비용과 관련한 지원은 없다

표 2 학교기업지원사업 재정지원 연도별 현황

구분	1기 ¹⁾		2기 ¹⁾		3기	전체	
	2004년	2005년 ²⁾	2006년	2007년	2008년		
지원 예산 ³⁾ (천원)	학교급 전체(A)	10,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70,000,000
	대학교 전체(B) (B/A)(%)	5,220,000 (52.2)	5,514,000 (34.2)	5,530,000 (36.9)	5,905,000 (39.3)	3,450,000 (23.0)	25,619,000 (36.6)
	대학교 평균 (B/C)	290,000	306,333	291,052	347,352	215,625	512,380
	대학교 기수 전체	12,394,000		11,435,000		3,450,000	27,279,000
지원 학교수 (개교)	대학교(C)	18	18 (해지4, 추가 ⁴⁾ 4)	19	17 (해지2)	16	50 ⁶⁾
	전문대	17	20(해지1, 추가4)	18	18	23	50
	전문계고	5	7(추가2)	13	13	27	66
	계	40	45	50	48	66	118

주 1) 기수별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어 지원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2) 1기 2차년도(2005년)에는 신규로 10개 학교가 선정되고 5개교가 협약 해지함.

주 3) 지원예산은 지원금과 평가, 선발 등에 사용된 금액 포함함.

주 4) 1기 추가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에 사업 종료함.

주 5) 추가지원의 경우, 그 해의 지원금에 이를 포함한 금액임.

주 6) 전체 합계의 학교수는 중복되는 학교는 1개교로 계산한 값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8). '08년도 학교기업, 66개교 선정지원의 자료를 재구성 및 수정함.

학교기업지원사업은 2004년 9월에 제1기를 시작하여 2006년 8월에 종료하였고, 2005년 1월에 제1기 추

가지원 대상을 선발하여 2006년 12월에 종료하였다. 2기 학교기업지원사업은 2006년 1월에 시작하여 2007



년 12월에 종료되었다. 특히, 1기, 1기 추가, 2기 학교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성과를 비교하기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지원 기

수별로 지원현황을 보는 것이 적절한데, 기수별 지원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학교기업지원사업 재정지원 기수별 지원 현황

구 분	학교수(개교)										예산 (억 원)
	대학교			전문대			전문계고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계		
1기('04.9~'06.12)	22	-	22	21	-	21	7	-	7	50	250
2기('06.1~'07.12)	12	7	19	12	6	18	12	1	13	50	300
3기('08.1~'08.12)	5	11	16	9	14	23	16	11	27	66	150
합계			39			42			36	118	700

주) 1~3기 재정지원 수혜 학교 합계는 중복되는 학교는 1개교로 계산함.

<표2>와 <표3>을 보면, 전체 지원대상 학생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교 지원대상 학생수는 반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학교기업의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 유형을 수익형과 교육형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 수익형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과 같이 사업을 통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교육형이라고 하면 사업을 통한 이윤은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학교기업의 본래 취지인 교육적인 목표를 기본으로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학교기업에서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활용의 경직성이다. 예산활

용경직성의 이유는 비목 간 금액조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학교기업지원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셋째, 학교기업의 회계업무처리 측면에서 볼 때, 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있어 학교기업의 회계업무지원을 받고 있으나 회계업무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기업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경우 학교기업 내부결재, 산학협력단의 결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를 준 경우, 총장의 결재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가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의 수를 학점 인정 학생과 학점 비인정 학생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각 학교마다 많은 차이(예: 학점인정학생수와



학점비인정학생수의 합계가 100명 미만인 학교가 있는 반면,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었음)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학교기업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며, 일부 학교기업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어 학교기업 소속 직원들이 학교기업에 대한 애착이 약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섯째, 학교기업의 인센티브 및 장학금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학교기업지원사업 운영지침에는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3기 지원사업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총괄책임자가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수정을 하였지만, 강제지침이 아니고 실제 일정금액을 받는 총괄책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기업의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때,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하고 일괄 지급하는 점, 신규학교기업에 너무 집중되는 점, 현 재정지원 방식이 각기 다른 학교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 학교기업에 대한 평가가 나빠도

특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학교기업 재정지원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덟째, 학교기업의 스피ن 아웃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 평가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어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수준 및 수익수준에 관한 기준·과정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의 활성화 방안

첫째, 학교기업의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원래 학교기업은 분명히 교육적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학교기업지원사업」 역시 현장적합성 있는 인력의 양성을 주목적(主目的)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기업 간 운영상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교육중심형 학교기업과 사업중심형 학교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식 및 예산 활용방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표 4> 참조). 또한, 학교기업 신청 시에 해당 학교는 학교기업의 사업 목적(교육중심형, 사업중심형)을 밝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며, 각 유형별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표 4 교육형 학교기업과 수익형 학교기업의 예산 활용 개선안

- 교육중심형 학교기업 : 교육 투자비와 관련한 추가 지원금을 받는 만큼 실험실습비, 장학금, 교육과정 개발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엄격하게 제시되어야 함.
- 사업중심형 학교기업 : 교육 투자비 명목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존처럼 국고지원금의 20% 이상을 실험실습비와 교육과정개발비에 투자하게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함.

둘째,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시설투자 등을 확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산 소요가 원하는 범위

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자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율성 추구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목



간 변경의 비율을 높이고, 승인절차를 간소화 혹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통보만 하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회계업무처리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의 회계업무처리를 산학협력단과 분리하거나 산학협력단의 학교기업 관리업무를 학교기업에 위임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회계업무처리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관장의 승인 과정을 통보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장실습 측면에서 볼 때, 학교기업은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진 현장실습이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여 학교 내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습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런 설립배경을 고려할 때 학교기업은 기존의 현장실습이 가졌던 문제점들을 보완한 형태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기업을 통한 현장실습을 위한 계획, 실행,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학교기업이 지원사업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사업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학교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기업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기업 고용직원의 복지차원에서 각 학교가 지원처우 개선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인센티브 및 장학금 측면에서 볼 때, 총괄책임자들은 과중한 업무처리와 교육활동을 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학교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총괄책임자에 대한 업무지원과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기업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제시해야 한다.

일곱째,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때, (1)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금액을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기업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고 사업의 규모와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해 차등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상관없이 많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등급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범위를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며, (2) 학교기업을 과거에 정부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규와 기존으로 나누지 말고 학교기업의 설립시기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3) 지원 금액을 공통경비와 특수경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공통경비는 업종과 상관없이 필요한 인건비, 교육관련비용, 여비 및 교통비, 간접경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금액을 말한다. 공통경비는 학교기업의 업종과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규 여부, 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그리고 특수경비는 시설·기자재비, 제품비 등과 같이 각 학교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규 여부,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통해 학교기업의 업종과 각 학교기업이 처한 환경을 지원 금액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4) 재정지원이 끝난 후에도 학교기업 지원 사업비로 구매한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두어 학교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5) 재정지원기간을 기본 4~5년으로 연장하되 학교기업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통해 비성실 학교기업은 경고나 재정지원 삭감, 사업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퇴출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여덟째, 스핀 아웃 측면에서 볼 때, 대학교의 경우, 재정적으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경우에 대해 스핀아웃을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스핀아웃보다는 성공한 학교기업의 자립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 학교기업 재정지원 가능 기간을 최대 5년(안)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온 학교들을 스핀아웃 시키고, 남게 되는 예산을 신규 학교기업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다. (2) 스핀아웃에 대한 인센티브로 2년 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을 한 번에 지원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학교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를 통하여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핀아웃으로 통해서 이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4) 「학교기업지원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매우 우수한, 소위 스타 학교기업에 대한 홍보가 타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필자 소개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객원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산업교육학회회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업인력개발발전공 교수 및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산업인력개발론」,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교진로상담」 등이 있으며,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학교기업지원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직업교육, 진로교육, 산업교육 등이다.

대학교 단계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은...

학교 기업의 정체성 측면
예산 활용 측면
회계업무처리 측면
현장실습 측면
인력관리 측면
인센티브 및 장학금 측면
재정지원 측면
스핀 아웃 측면

